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연장〉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8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연장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5
다. 검토의견	9
라. 관계 기관 등 의견	12

I. 개요

1.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연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신성범의원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 ----- -----제88조제4항----- -----2031년----- ----- ----- ----- -----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 ----- ----- ----- -----

에 계는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8조 제4항-----2031년-----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1) 근거 규정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한시적 특례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¹⁾,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²⁾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³⁾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2) 연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농어민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시적 지원제도로 도입되었음.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 이후 지원기한 연장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보건복지부 및 농림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어민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07년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금보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년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 2014년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추가로 연장하였으며,

2020년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5년간 지원기한을 재연장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 연장 연혁>

구분	관련 근거	일몰 기한	비고
1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4909호, 1995.1.5.> 제5조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1995. 1. 5. ~ 2004. 12. 31.	-
2	보건복지부-연금정책과-321(2005.2.2.) “2005년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사업 지침 알림”	2005. 1. 1. ~	연장법안 미통과로 지침에 따른 국고 지원
3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2007. 7. 23. ~ 2014. 12. 31.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및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농어업인
4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1143호, 2011.12.31.>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 2014. 12. 31.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5	국민연금법 [법률 제12242호, 2014.1.14. 일부개정] 中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1143호, 2011.12.31.> 제7조	2014. 1. 14. ~ 2019. 12. 31.	-
현행	국민연금법 [법률 제16867호, 2020.1.21. 일부개정] 中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11143호, 2011.12.31.> 제7조	2020. 1. 1. ~ <u>2024. 12. 31.</u>	-

자료: 보건복지부

(3)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⁴⁾⁵⁾.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의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함.

- 기준소득금액⁶⁾(103만원) 이하: 월 연금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 기준소득금액(103만원) 초과: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50% 정액 ('24년 최대 46,350원) 지원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2023년말 기준 35만 9,959명이며, 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1,563억원 수준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구분	'20결산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지원 기준소득월액	97만원	100만원	103만원		
지원 사업비(억원)	1,746	1,751	1,686	1,766	1,563
지원 대상자(명)	408,607	397,574	384,484	359,959	-

자료: 보건복지부

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5)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호]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0호)

('06) 48만원 → ('07) 52만원 → ('08) 62만원 → ('09) 73만원 → ('10~'13) 79만원 → ('14) 85만원 → ('15~'18) 91만원 → ('19~'20) 97만원 → ('21~'22) 100만원 → ('23~) 103만원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농어업인까지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연장되어 온 제도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외에 2011년 12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⁷⁾이 신설되었고, 2020년 1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규정⁸⁾이 신설됨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저소득 가입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었음.
- 개정안과 같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7년간 연장하는 경우, 지원대상인 저소득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및 가입기간 증대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

7)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가입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

구분	사업장가입자 대상	지역가입자 대상	
	두루누리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23년 기준 91.9만명)	농·어업인 (지역가입 및 지역임의계속) ('23년 기준 35.9만명)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23년 기준 15.4만명)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9.4만원/월) * 사용자, 근로자 모두 지원	보험료의 50%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이상 월 최대 4.6만원 지원	보험료의 50%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상 월 최대 4.6만원 지원
지원 기간	최장 36개월	-	최장 12개월
재산 소득 요건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재산) 12억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예산액 ('24년)	8,250억원 (대상인원 97.4만명)	1,565억원 (대상인원 28.2만명)	399억원 (대상인원 17.5만명)
시행	2012년 7월부터	1995년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과 같이 지원기간이 연장되면 2025~2031년 7년간 총 9,969억원(연평균 1,424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단위: 명, 원,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연평균
월 평균 대상자 수 (A)	293,125	279,359	266,240	253,736	241,820	230,463	219,640	-	-
1인당 지원단가 (B)	44,864	45,454	46,053	46,659	47,273	47,895	48,526	-	-
추가재정 소요 (A×B×12개월)	1,578	1,524	1,471	1,421	1,372	1,325	1,279	9,969	1,4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현행 법에 따른 지원기한(2024년 12월 31일) 종료 전에 이루어진다면 적용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⁹⁾

□ 참고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제20대 국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원기한 이후(2020년 1월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공백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였음.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라. 관계기관 등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수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노후에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되어 온 민생안정 정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